

검 토 보 고 서

〈전문위원 최종익〉

1. 안 건 명

우리동네키움센터(성산동, 망원동) 민간위탁 동의안

2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-51호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1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3일

3. 제안이유

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,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의 목적

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 중심의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·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돌봄서비스 조직·인력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탄력적인 인력 관리 및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함

나. 민간위탁의 내용

- 1) 위탁기간: 5년
- 2) 위탁운영 시설현황

시설명	성산동우리동네키움센터	망원동우리동네키움센터
위치	마포구 월드컵로36길 52, 2층	망원동 458-46 (망원한강아이파크 커뮤니티센터 1층 내)
면적	102.15m ²	90m ²

- 3) 위탁사무 범위 :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- 4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5)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구성)

다. 소요예산

(단위: 천원)

시설명	보조금	비고
성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	107,436 (국:15,112 / 시:83,924 / 구:8,400)	
망원동 우리동네키움센터	142,671 (국:44,713 / 시:93,058 / 구:4,900)	

라. 세부추진일정

- 1) 공개모집 공고 : 2019. 5. 22. ~ 6. 12.
- 2) 신청서 접수 : 2019. 6. 13. ~ 6. 21.
- 3) 선정심사 : 2019. 6. 26. ~ 7. 3. (기간중 1일)
- 4) 심사결과 발표 : 2019. 7. 9.
- 5) 협약체결 : 2019. 7월 중
- 6) 업무개시 : 2019. 8. 1.
(망원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공사 완료 후)

5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,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나.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- 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라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동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

6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내 설치하는 초등학생 대상 돌봄 서비스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아동돌봄서비스 조직·인력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(법인 또는 단체)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임.
- 위탁운영 시설은 성산동우리동네키움센터와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센터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, 위탁사무의 범위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과 맞춤형 돌봄 상담 등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이 되겠음.
- 다만, 2019년부터 4년에 걸쳐 총 14개소의 우리동네키움센터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바,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항의 신설 목적에 맞게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센터 운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7. 참고자료

○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	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.	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	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, 운영 및 관리	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	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	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아동복지법」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	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	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	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	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	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	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	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	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	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	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 신설 2019. 1. 15.]	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	①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9.24>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	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	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	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	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4. 5. 20., 2016. 2. 3., 2016. 5. 29., 2017. 10. 24.›

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나. 「아동복지법」

다. 「노인복지법」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

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바. 「영유아보육법」

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›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›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›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›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›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› [제목개정 2011. 8. 4.]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›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›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›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[제23조에서 이동 <2012. 8. 3.›]